

#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4
----------	-----

제출년월일 : 2001. 4. 24.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체육시설이용상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운동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규정을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시간을 초과사용시 허가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화 함.(안 제7조)
- 다.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을 추가함.(안 제13조)
- 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취소 중 사용제한과 중복규제를 삭제함.(안 제16조)
- 마. 체육시설 허가사항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 바.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중 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함.(안 별표1)

## 3. 참고사항

-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정비
-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 4. 본 문

- 붙임과 같음.

##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한다.”로 한다.

제7조제2호중 “시설관리상”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3호의 내용에 “장애인”을 삽입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중 구 공설운동장 및 신 공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설 별	시 기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구 공 설 운 동 장	조 기	체육경기	“	8,000	9,000		
		체육이외	“	13,000	1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이외	“	50,000	6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이외	“	25,000	35,000		
신공설 운동장	조 기	체육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축 구 장 및 육 상 경 기 장 을 동 시 사 용 시 합 산 함	
		체육이외	“	100,000	120,000		
	주 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이외	“	200,000	250,000		
	야 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이외	“	130,000	160,000		
	육 상 경 기 장	조 기	체육경기	(1회)1일	10,000		13,000
			체육이외	“	15,000		20,000
		주 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이외	“	6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이외	“	30,000		4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허가) ①(생략)</p> <p>②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u>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③(생략)</p>	<p>제3조(사용허가)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u>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생략)</p> <p>2.<u>시설관리상</u>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p> <p>3.~4호(생략)</p>	<p>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1.(현행과 같음)</p> <p>2.<u>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u>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p> <p>3.~4호(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2호(생략)</p> <p>3.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p> <p>4.~5호(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2호(현행과 같음)</p> <p>3.----- -----, <u>장애인</u></p> <p>4.~5호(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용허가취소및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1.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p> <p>2.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p> <p>3.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p> <p>4.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p> <p>5.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p> <p>②(생략).</p>	<p>제16조(사용허가취소및정지) ①----- ----- -----</p> <p>1.(삭제)</p> <p>2.(현행과 같음),</p> <p>3.(삭제)</p> <p>4.(삭제)</p> <p>5.(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p>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p>	<p>제18조(삭제)</p>

# 신 · 구 대 비 표

현            행

**【 별표 1 】**

1. 기본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기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실 내 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1일)	8,000	10,000	
		체육이외	“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이외	“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이외	“	30,000	40,000	
구공설 운동장	1일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이외	“	50,000	60,000	
신공설 운동장	1일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이외	“	120,000	150,000	

※시간당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5 가산

별표1의 2~4(생략)

# 신 · 구 대 비 표

개 정 안

**【 별표 1 】**

**1. 기본사용료**

시설별 구분	시기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고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실 내 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1일)	8,000	10,000		
		체육이외	"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이외	"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이외	"	30,000	40,000		
구공설 운동장	조기	체육경기	"	8,000	9,000		
		체육이외	"	13,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이외	"	5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이외	"	25,000	35,000		
신공설 운동장	축 구 장	조기	체육경기	1회(3시간)	60,000	80,000	축구장 및 육상경기장 을 동시 사용시 합산함
			체육이외	"	100,000	120,000	
		주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이외	"	200,000	250,000	
		야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이외	"	130,000	160,000	
	육상 경기 장	조기	체육경기	(1회)1일	10,000	13,000	
			체육이외	"	15,000	20,000	
		주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이외	"	60,000	80,000	
		야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이외	"	30,000	40,000	

※시간당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5 가산

별표1의 2~4(현행과 같음)